

광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55315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5531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194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호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하, 김대현

변론 종결 2019. 12. 20.

판결 선고 2020. 2. 1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194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4. 8."을 "2019. 4. 9."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 기재 "원고로부터"를 "원고들로부터"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장기간 동안 계약금의 반환을 독촉하지 않는 등 계약금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계약금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장기간 동안 원고들의 잔금지급을 기다려 주었음에도 원고들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피고의 신뢰에 현저히 위배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잔금미지급에 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만 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000만 원 +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기재 "2019. 4. 8."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9. 4. 9."로 경정한다.

재판장판사김성곤

판사김성준

판사박주영